



권리의 다발, 저작권



글 | 이호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leehs@hansung.ac.kr

저작권은 인쇄기술과 계몽주의에 바탕을 두고 태어난 근대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물을 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손쉬워졌고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인쇄기술과 컴퓨터, 통신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저작권법」은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고, 현대적인 적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작권이 구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제도의 일대 혁신이나 심지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이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저작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할 수 있지만,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약하는 기

본 법률로써 「저작권법」은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듯 하다.

흔히들 저작권이라고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작권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권리들의 복합체이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저작권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세부적인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권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리까지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저작권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권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와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로 구성이 된다. 협의로 저작권을 지칭할 때에는 저작재산권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저작인격권까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지칭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재산권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 자신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인격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로 구성하고 있다. 첫째, 공표권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표권은 저작물의 최초의 공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효력이 다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표권은 이미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저작물 사용허락이나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표권으로 인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스에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저작자가 제공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기증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공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 필명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사람이 저작자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성명표시권은 공표권과는 달리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모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모두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이 된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제3자가 임의로 변경, 삭제하여 당초 저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오·탈자의 수정이나 저작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한 사소한 사항의 변경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거래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분권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권리의 보장 내용이 약간씩 상이하게 구성이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유형의 매체에 저작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매체에 저작물을 옮겨서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복제의 개념에 추가된 사항이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이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여 통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폭넓게 공연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나 영상자료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것도 「저작권법」상의 ‘공연’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중송신권은 이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던 전송권과 방송권을 통합한 것이며, 거기에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공중송신권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송으로 규정하기도, 방송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들까지를 포괄하기 위한 권리 개념이다. 우리 법에서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끔 음과 영상 또는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송’은 여러 사람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방송’은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송’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시간을 수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은 웹 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은 아니지만 방송과 유사하게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을 송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공중송신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저작물 이용행태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무선 또는 유선, 방송형 또는 주문형(on-demand) 등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두 적용이 된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권리로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그 원본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원본 저작물의 소장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소장한 저작물을 활용해서 일정기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술 저작물 등의 판매를 위하여 저작물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도록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도록은 저작물의 판매를 돕기 위한 수단 정도에서 그쳐야지, 감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럽고 세밀하게 인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원작품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적으로 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포’라 함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포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배포권은 물리적인 매체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전송이나 방송, 복제 등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배포권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입수한 저작물이라면 그 소유자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에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나 음반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대여권은 배포권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판매용 음반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만 국한되어서 적용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만화의 상업적인 대여에 대해서도 대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대여권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권리로 ‘공공대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한다.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권리이다.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이 저작물의 판매 수요를 줄여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북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대출권의 경우에는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대여권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출의 빈도가 아주 높은 인기 저작자에게는 많은 경제적인 보상이 제공되지만 그렇지 못한 저작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대출권을 반대하는 논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정부가 저작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 다양한 저작물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도 저작자들에 대한 지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생산해 낸 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각색,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지칭한다. 2차적 저작물의 적법한 작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한 번역자, 각색자, 편곡자, 영상제작자의 저작권은 별도로 보장이 된다.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거나 상관없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㉔